



대구대학교 · 조선대학교



## 대학원 학점 교류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구대학교 대학원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학점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서는 양교 대학원 간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에게 적용 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 ① 학점교류 교과목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속 대학원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이수한다.

② 양교는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개강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소속 대학원의 원장은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개강 2주 전에 추천하며, 수강 대학원의 원장은 추천된 학생의 수강 허가 여부를 개강 전에 소속 대학원에 통보한다.

④ 이수 교과목의 인정 및 취득학점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의 규정과 방침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교류대학에서 수강 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류대학은 별도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성적처리) 학점교류 협약에 의거 수강신청한 학생의 성적은 양 교의 학칙에 따라 평가 한 후 학생의 소속 대학원에 통보한다.

제6조(기타) ① 학점교류에 따라 교류하여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수강 대학원의 학생과 동일하게 편의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학생복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따른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원이 책임진다.

③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양교 대학원의 총괄 책임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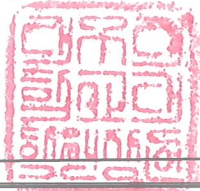
④ 이 협약서는 양교의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양교의 대학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행정사항) 이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7월 15일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최 철 영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이 제 홍

